

경력직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기준(기술직 7급)

-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*은 불합격 처리하고, 자격학위, 관련 경력,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고,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**

* 불성실 작성: 기관명 오기재, 작성항목 누락, 문항별 답변 중복, 의미 없는 문자 나열,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

- 서류전형 평가 배점표 및 배점 기준** (단위: 점)

구 분		평가내용 및 점수		
		해당분야 경력(40)	준법의식 및 안전운전 노력도 ³⁾ (10)	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등(50)
경력직	기술직 7급 (장비운영-운전원)	○(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공공기관 ¹⁾ 또는 법인에서 운전직 경력이 2년 이상~3년 미만: 20점 ○(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)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운전직 경력이 3년 이상~5년 미만: 25점 ○(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)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운전직 경력이 5년 이상 : 30점 ※ 아래 조건 중 충족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 10점(합산기준) 범위 내 우대가점 부여 - 공공기관 임원 ²⁾ 차량 운전 경력기간 · 1년 이상~1년 6개월 미만 : 1점 · 1년 6개월 이상~2년 미만 : 2점 · 2년 이상~2년 6개월 미만 : 3점 · 2년 6개월 이상~3년 미만 : 4점 · 3년 이상 : 5점 -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: 5점 -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· 자동차정비기능사 : 1점 · 자동차정비산업기사 : 3점 · 자동차정비 기사 이상 : 5점	○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 : 10점 ○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1건 이상인 경우 : 0점	평가위원 정성평가

※ 해당 경력 및 우대사항은 **채용공고 시작일(23.3.31.)**까지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및 자격취득에 대해 경력증명서(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고 해당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) 등 증빙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하며,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 관련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- 1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기관에 한함
 ※ 근무기간은 총 합산하여 산출하며,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버림(ex. 5개월 15일 = 6개월)
 ※ 근무기간은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인정
- 2) 법인등기부등본 내 '임원에 관한 사항'에 명시된 임원에 한함
 ※ 단,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'해당 기관의 장'에 한하여 인정
- 3) 경찰청 교통민원24 등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(운전면허경력, 법규위반, 교통사고 항목 조회기간 '전체') 내역으로 평가